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6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3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22년 기준인건비 승인 인력 정원을 반영하고, 보건의료원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원장 직급채정 협의 결과반영 및 부서와 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반영을 위해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(안 제2조)

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: 774명 ⇨ 785명 (증 11명)
- 집행기관의 총수 : 762명 ⇨ 771명 (증 9명)
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2명 ⇨ 14명 (증 2명)

나.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일부 조정(안 별표 3)

- 총 계 : 774명 ⇨ 785명 (증 11명)
- 정 무 직 계 : 1명 (변동없음)
- 일 반 직 계 : 744명 ⇨ 753명 (증 9명)
 - 4급 : 3명 ⇨ 4명 (증 1명)
 - 4~5급 : 1명 ⇨ 0명 (감 1명)
 - 5급 : 32명 ⇨ 33명 (증 1명)
 - 6급 이하 : 708명 ⇨ 716명 (증 8명)
- 연 구 직 계 : 5명 (변동없음)
- 지 도 직 계 : 24명 → 26명 (증 2명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(관계법령 발췌)

나. 예산조치 : 붙임(비용추계서)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22.01.19. ~ 2022.01.2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비규제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774명”을 “78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762명”을 “771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12명”을 “14명”으로 한다.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785	785				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753	753				
4급	4	3		1		
4~5급						
5급	33	16	2	6	1	8
6급 이하	716	716				
전문경력관 소계						
연구직 계	5	5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5	5				
지도직 계	26	26				
지도관	1			1		
지도사	25	25				
별정직 계	0	0				
6급상당		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평창군에 두 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 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는 <u>774명</u> 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762명</u></p> <p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12명</u>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785명</u> -----.</p> <p>1. ----- <u>771명</u></p> <p>2. ----- <u>14명</u></p>

관계 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~3. (생략)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(생략)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~⑤ (생략)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가. 비용발생 요인 : 공무원 정원 11명 증가(774명 → 785명)
- 나. 관련조문 :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(정원의 총수)

2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
 - 1) 정원조정에 따라 증액되는 인건비에 대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추계함.
 - 2) 보수인상율 연1.4%를 기준으로 연도별 인건비 부담액을 산정함.
- 나. 추계결과 : 545백만원 / 1년

구 분	금 액	산 출 내 역	비 고
증원(11명)	544,451천원	◦5급 18호봉 기준 ⇒ 85,774천원 × 1명 = 85,774천원 ◦6급 10호봉 기준 ⇒ 58,581천원 × 3명 = 175,743천원 ◦7급 7호봉 기준 ⇒ 46,508천원 × 3명 = 139,524천원 ◦8급 3호봉 기준 ⇒ 34,640천원 × 2명 = 69,280천원 ◦지도사 3호봉 기준 ⇒ 37,065천원 × 2명 = 74,130천원	

- 다. 채용조달 방안 : 자체채원 및 지방교부세 채용

3. 관련 의견

- 가.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과장 김진용
연락처	(033) 330 - 2210

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 입						
		해	당	없	음	
세 출	544,451	552,073	559,802	567,639	575,586	2,799,551
일반회계	544,451	552,073	559,802	567,639	575,586	2,799,551
재원 조달	544,451	552,073	559,802	567,639	575,586	2,799,551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544,451	552,073	559,802	567,639	2,799,551
	지방세	544,451	552,073	559,802	567,639	2,799,551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